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 북 구
(일자리정책과)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안 번호	116
----------	-----

제출년월일 : 2023. 04.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우리구에서는 창업 3년이하 초기 창업기업에게 사무공간 및 전문적인 창업보육과 멘토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벤처창업지원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23. 6. 22.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현황

- 건 물 명 :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211(장위동 65-154)
- 규 모 : 대지 1,825㎡, 연면적 1,368㎡(지하1층 ~ 지상4층)
- 공간구성

층 별	면적(㎡)	주요시설
4층	40	보육실
3층	320	보육실
2층	320	보육실, 노동권익센터
1층	320	멀티미디어실, 회의실, 보육실, 성북구상공회
지하1층	368	보육실, 중장년기술창업센터

나. 위탁예정기간 : 2023. 6. 23. ~ 2026. 6. 22.(3년)

다. 위탁방법 : 심사위원회 적격심사 후 선정

라. 위탁사업의 범위

○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

- 입주기업 심사 및 선정

- 창업지원, 정보제공, 멘토링 등

○ 구청장이 벤처창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마. 기존 위탁현황

기관명	대표자	시설명	위탁기간 (최초위탁일)
한성대학교	이창원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2020. 6. 23. ~ 2023. 6. 22. (2000. 3. 23.)

3.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정보제공 및 경영 지원등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 등)

-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민간위탁사무 내용)

1.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자활·취업·창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3. 문화·예술·영상·도서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교육·교양·체육·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5. 보건·건강증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사회적기업, 공정무역, 마을만들기 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7. 보훈 회관 운영 및 관련 사무
8. 그 밖에 청소, 경비, 교통, 주차장 운영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